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기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65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8.

발 의 자 : 김기현 · 이달희 · 김기웅
이인선 · 김용태 · 윤한홍
김미애 · 김정재 · 조정훈
서범수 · 박성민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(이하 “박람회”라 함) 유치가 AIPH(국제원예생산자협회)에서 최종 승인(2024. 9. 5.)됨에 따라 2028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후 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.

이에 「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」을 2026년 2월 27일 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·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·사용 및 수익하게 하도록 특례를(특별법 제19조)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223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2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연 번	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	특례유형	존속기한
223	「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」 제19조제1항	사용료등의 감면	2029. 12. 31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